

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뿐만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는 경우도 도세를 면제
-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·임대한 경우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충북지역 도내에 중소기업을 설립코자 하거나 또는 진입유치를 희망하는 외부자본가의 중소기업 입지선정 문제를 고려하여

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해 나아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현행 조례에 있어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도세감면 혜택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뿐 만 아니라

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확대 시행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함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의 조건부 의무이행을 실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규정을 명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 향상차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첨 부

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